

이전회 680814 -

[별지 제6호서식]

[V] 외래 [] 입원 ([] 퇴원 [] 중간)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

환자등록번호		환자 성명		진료기간		야간(공휴일)진료	
42718		이진희		2014-08-23		[] 야간 [] 공휴일	
진료과목		질병군(DRG)번호		병실		환자구분	
재활의학과						영수증번호(연월-일련번호)	
				직장조합		1408-00019	
항목		급여		비급여		금액산정내용	
		일부 본인부담	전액	선택	선택		
		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본인부담	진료료	선택 진료료 이외	
		4,125	12,995	0	0	0	⑦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+⑤) 115,800
진찰료		0	0	0	0	0	⑧ 환자부담 총액 (①-⑥)+③+④+⑤ 89,000
입원료		0	0	0	0	0	⑨ 이미 납부한 금액 0
식대		0	0	0	0	0	⑩ 납부할 금액 (⑧-⑨) 89,000
투약 및 행위료		0	0	0	0	0	⑪ 납부한 금액 (⑩-⑨) 89,000
조제료		0	0	0	0	0	카드 현금영수증 0
주사료		0	0	0	0	0	현금 0
행위료		0	0	0	0	0	합계 89,000
약품비		0	0	0	0	0	납부하지 않은 금액(⑩-⑪) 0
마취료		0	0	0	0	0	현금영수증 ()
처치 및 수술료		0	0	0	0	0	신분확인번호
검사료		0	0	0	0	0	현금승인번호
영상진단료		4,306	10,046	0	0	0	* 요양기관 입의활용공간
방사선치료료		0	0	0	0	0	5349 - 김병근
치료재료대		82	193	0	0	19,000	필요시 영자
재활 및 물리치료료		1,518	3,542	0	0	60,000	
정신요법료		0	0	0	0	0	
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		0	0	0	0	0	
CT 진단료		0	0	0	0	0	
MRI 진단료		0	0	0	0	0	
PET 진단료		0	0	0	0	0	
초음파진단료		0	0	0	0	0	
보철 · 교정료 · 기타		0	0	0	0	0	
65세 이상 등 정액		0	0	0	0	0	
정액수가(요양병원)		0	0	0	0	0	
포괄수가진료비		0	0	0	0	0	
합계		① 10,000	② 26,800	③ 0	④ 0	⑤ 79,000	
상한액 초과금		⑥ 0					선택진료 신청 [] 유 [] 무
요양기관 종류		[V] 의원급 · 보건기관 [] 병원급 [] 종합병원 [] 상급종합병원					
사업자등록번호		129-91-59867		상호		메트로재활의학과	
사업장 소재지		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-6		대표자		최장휴 [인]	
						2014년 8월 26일	
항목별 설명				일반사항 안내			
1. 일부 본인부담 :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, 요양기관 지역, 요양기관의 종별,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 외래 본인부담률 :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%~6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등에 따라 0원~2500원, 0%~15%) 등 - 입원 본인부담률 : 2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%~10%) 등 ※ 식대 : 50%(의료급여는 20%) CT·MRI·PET : 외래 본인부담률(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) 2. 전액 본인부담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5 또는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(의료급여)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 3. 상한액 초과금 :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400만원(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				1. 이 계산서 ·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의2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 11조의 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1644-2000, 홈페이지 : www.hira.or.kr)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. 3. 계산서·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(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함)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"현금영수증(지출증빙)"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: http://현금영수증.kr)			
주(註) :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							

환자등록번호	환자 성명		진료기간		야간(공휴일)진료	
42718	이진희		2014-08-26		[]야간 []공휴일	
진료과목	질병군(DRG)번호		병실	환자구분	영수증번호(연월-일련번호)	
재활의학과				직장조합	1408-00018	
항목	급여			비급여		금액산정내용
	일부 본인부담		전액	선택	선택진료료	
	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본인부담	진료료	이외	
진찰료	2,964	6,916	0	0	0	⑦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+⑤) 75,210
입원료	0	0	0	0	0	⑧ 환자부담 총액 (①-⑥)+③+④+⑤ 64,500
식대	0	0	0	0	0	⑨ 이미 납부한 금액 0
투약 및 조제료	0	0	0	0	0	⑩ 납부할 금액 (⑧-⑨) 64,500
행위료	0	0	0	0	0	
주사료	0	0	0	0	0	⑪ 납부 한 금액
행위료	0	0	0	0	0	
약품비	0	0	0	0	0	
마취료	0	0	0	0	0	카드 64,500
처치 및 수술료	0	0	0	0	0	현금영수증 0
검사료	0	0	0	0	0	현금 0
영상진단료	0	0	0	0	0	합계 64,500
방사선치료료	0	0	0	0	0	납부하지 않은 금액(⑩-⑪) 0
치료재료대	82	193	0	0	0	현금영수증 ()
재활 및 물리치료료	1,518	3,542	0	0	60,000	신분확인번호
정신요법료	0	0	0	0	0	현금승인번호
전혈 및 혈액성분제료	0	0	0	0	0	*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S5349 - 질병코드 판공리 영파
CT 진단료	0	0	0	0	0	
MRI 진단료	0	0	0	0	0	
PET 진단료	0	0	0	0	0	
초음파진단료	0	0	0	0	0	
보혈·교정료·기타	0	0	0	0	0	
	0	0	0	0	0	
65세 이상 등 정액	0	0	0	0	0	
정액수가(요양병원)	0	0	0	0	0	
포괄수가진료비	0	0	0	0	0	
합계	① 4,500	② 10,710	③ 0	④ 0	⑤ 60,000	
상한액 초과금	⑥ 0					선택진료 신청 []유 []무
요양기관 종류	[V] 의원급·보건기관 [] 병원급 [] 종합병원 [] 상급종합병원					
사업자등록번호	129-91-59867		상호	메트로재활의학과		전화번호 031-781-6543
사업장 소재지	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-6			대표자	최장휴 [인]	
2014년 8월 26일						
항목별 설명				일반사항 안내		
1. 일부 본인부담 :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, 요양기관 지역, 요양기관의 종별,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 외래 본인부담률 :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%~6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등에 따라 0원~2500원, 0%~15%) 등 - 입원 본인부담률 : 2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%~10%) 등 ※ 식대 : 50%(의료급여는 20%) CT·MRI·PET : 외래 본인부담률(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) 2. 전액 본인부담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5 또는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(의료급여)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 3. 상한액 초과금 :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400만원(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				1. 이 계산서·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의2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 11조의 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1644-2000, 홈페이지 : www.hira.or.kr)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. 3. 계산서·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(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함)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"현금영수증(지출증빙)"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: http://현금영수증.kr)		
주(註) :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						